

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11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에 있는 중·소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지역서점의 정의(안 제2조)

○ 도지사의 책무(안 제4조)

○ 지역서점의 지원(안 제6조)

- 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,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
- 협업사업, 문화·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
- 홍보,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
- 자금·인력·기술·판로·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

-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지역서점 인증(안 제7조)

○ 지역서점위원회(안 제8조~제13조)

○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(안 제14조)

-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있는 중·소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,
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,

-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사항을,
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에 대한 사업과 지역서점 인증 제도 사항을 명시하였고,

-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및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 조례안은 도내 중·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. 끝.